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25 발의연월일: 2025. 2. 25.

발 의 자:김용태·서천호·이종배

강대식 • 박준태 • 김재섭

조은희 · 김위상 · 서명옥

유용원 · 김민전 의원

(119]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경미한 건축허가의 변경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교육환경평가서의 이행사항 확인에 복잡성이 요구되는 경우 교육청의 인력과 전문성으로는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 중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 확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미비

점을 보완해 교육환경 피해 방지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자가 그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함(안 제6조의2 신설).
- 나.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도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제7조).
- 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 라. 교육환경평가서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용지 선정 등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함(안 제16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조의2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변경

제6조제3항 중 "승인하기"를 "승인(제6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하기"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교육환경평가서의 변경승인)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자가 그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공무원으로"를 "공무원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이하 "위탁기관 임직원"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은"을 "공무원 또는 위탁기관 임직원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

에"로 한다.

③ 교육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에 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용지 선정 등을 변경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환경평가서의 변경승인을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제6조의2에 따른 교육환	
	<u> 경평가서의 변경</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3	
<u>승인하기</u> 위하여는 시·도위원	승인(제6조의2에 따른 변경승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		
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		
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		

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u><신 설></u>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 ① (생 략)
- ②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있다.

- ④ ~ ⑧ (현행과 같음)
- 제6조의2(교육환경평가서의 변경 승인)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 받은 자가 그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교육환경에 미치는영향이 크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 ① (현행과 같음)
- ② ------

---<u>공</u>무원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이하 "위탁기관 임직원"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 조사를하는 <u>공무원은</u> 관계인에게 그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내보여야한다.
- ④·⑤ (생략)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제·② (생략)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u>이라 한다)으로</u>
,
③
공무원 또는 위탁기관 임직
<u>원</u> 은
④·⑤ (현행과 같음)
∥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제7조제2항에 따
③ 교육감은 제7조제2항에 따
③ 교육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
③ 교육감은 제7조제2항에 따 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 의 이행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
③ 교육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③ 교육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생략)

<신 설>

2. ~ 4. (생략)

제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현행과 같음)
1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교
육환경평가서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용지 선정
등을 변경한 자

2. ~ 4. (현행과 같음)